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3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일

발 의 자 : 강성삼 의원

1. 제안이유

가. 조례에 인용된 다른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례명을 정비함
(안 제7조제2항)

-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 행정 운영 조례」

나.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 (안 제3조, 제7조)

- ‘각종(各種)’ → ‘여러 가지’
- ‘익일(翌日)’ → ‘다음 날’

다.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하고 어법에 맞게 다듬음 (안 제3조)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제명이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익일(翌日)’, ‘각종(各種)’ 등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다음 날’, ‘여러 가지’와 같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고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임.

나. 입법 적정성

- 조례의 체계 정비와 법적 명확성 제고는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다. 법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형식적 정비에 해당하고, 조문 전체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부의 체계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임.

라. 결론

-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